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13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이현승  
고동진 · 유용원 · 백종현  
박충권 · 이인선 · 윤한홍  
이달희 · 이종욱 · 박상웅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특정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됨.

그런데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랜섬웨어와 같은 해킹 범죄로 인하여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다크 웹 등을 통한 해킹도구의 지능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임.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처벌 정도가 범죄의 죄질과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로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는 해킹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에 해킹범죄를 포함함으로써 해당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나목).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제1항의 죄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p> <p style="padding-left: 40px;">1) ~ 6)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3. ~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p> <p style="padding-left: 40px;">1) ~ 6)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7) 「<u>정보통신기반 보호법</u>」 제28조제1항의 죄</p> <p style="padding-left: 40px;">8)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죄</p> <p>3. ~ 5. (현행과 같음)</p>